

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60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·탄천 물재생센터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을 추진중임
- 나. 설립 예정 공단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 상황임
- 다.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물재생시설공단
- 출자규모 : 20억원

- 공단 현금출자 규모는 공기업설립시 일반적 자본금 산정기준인 1개월 임·직원 인건비와 운영비(1개월 인건비의 20%)를 합산하여 산출

※ '20년 서남·탄천 1개월 인건비는 약 1,507백만원으로 공단 전환시 직원 임금 예상분 및 임원(4명)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개월 인건비를 1,667백만원으로 산정

(단위 : 천원)

	인건비('20예산)	1개월 인건비(총 인건비/12개월)
서남물재생센터	10,660,666	888,389
탄천물재생센터	7,434,047	619,504
총 계	18,094,713	1,507,893

나. 출자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물재생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, 경영효율성 저하, 반복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추진중임
- 공단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의 현금출자가 필요한 상황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

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~②항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공기업법】

제53조(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~③항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물재생시설과 공단추진팀 김성관(☎ 2133-3847)